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검 토 보 고 서

2026. 11. 16.(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해영 의원 외 8명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차혜영의원 외 8 명

○ 제안일 : 2026. 11. 6.

○ 회부일 : 2026. 11. 9. (의안번호 : 26 -139)

2. 제안이유

○ 공유의 범위를 대여·교환·나눔·재사용 등으로 확대하고, 생활권 내 공유거점의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공유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자원순환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추가함(안 제1조)

○ 공유의 범위를 대여·교환·나눔·재사용 등으로 확대하고, 공유거점의 정의를 신설하며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 생활물품 공유, 유휴공간 활용, 수리·재사용 연계 등 공유 촉진 사업을 구체화함(안 제6조)

○ 공유거점의 설치·운영 및 지정, 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자원순환 연계, 공유거점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

○ 재정지원 대상을 공유 촉진사업을 수행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구체화하고, 기존 공유촉진위원회의 사전심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7조)

○ 공유 촉진 및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61조

○ 입법예고 : 2026. 11. 9.(월) ~ 2026. 11. 13.(금)

○ 별표자료 첨부

5. 검토보고

1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차해영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의 범위를 대여·교환·나눔·재사용 등으로 확대하고, 생활권 내 공유거점의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공유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 공유 촉진의 목적 및 정의 확대

○ (안 제3조 및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기업·단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6조) 공유 촉진사업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안 제7조 및 제8조) 공유거점 설치·운영 및 협력 근거 신설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 및 안건별 한시적 운영 근거 마련

○ (안 제17조) 공유 촉진사업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관리 규정 정비

○ (안 제18조)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

○ 그 밖에 조문 이동 및 불필요한 규정 정비

3 조문별 검토내용

1. 공유 촉진 목적 및 정의 확대(안 제1조 및 제2조)

○ 공유의 범위를 기존 물건·공간의 공동 이용에서 대여·교환·나눔·재사용 등으로 확대하고, 자원순환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조례의 목적에 추가하는 것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유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자원순환 및 재사용 관련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별 기능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구청장의 책무 및 공유 촉진사업 확대(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

○ 공유정책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물품 공유, 유휴공간 활용, 수리·재사용·새활용 등 공유 촉진사업을 구체화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구청장의 지원 의무를 강행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원 여부에 대한 재량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기준과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 공유거점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및 제8조)

○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활용한 공유거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의 공유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유휴자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공유거점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비와 인건비 등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 가능성과 신규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민간시설 지정 시 운영주체와 관리책임,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4. 공유촉진위원회 운영방식 변경(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공유촉진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자문 종료 후 해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원회의 반복적인 구성·해산에 따른 행정 부담과 정책의 연속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절차, 구성시기 및 해산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과 예외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의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재정지원 및 보조금 관리(안 제17조)

○ 공유 촉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보조금의 중복지원 제한,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산·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관련 사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7조에서는 재정지원 대상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지원기준과 보조율,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음.

6. 포상 규정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18조 등)

○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르도록 한 점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조문 이동과 법령 제명 및 용어 정비 등은 조례의 체계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기존 조례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인용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④ 법적 타당성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활동 활성화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려

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유거점 설치·운영 및 공유 촉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은 자치사무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공유거점의 민간위탁 절차, 재정지원 대상의 명확성, 위원회 구성 및 성별 비율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타 자치구 공유거점 운영 현황

○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거점은 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입주 및 협력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성동구와 노원구는 생활물품 대여 등 주민 중심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마포구에서 도입하려는 공유거점은 생활물품 공유와 수리·재사용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시설이라는 점에서 성동구 등의 사례를 참고하되, 시설 운영비와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 번	조 례 명	내 용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8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4.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축적과 **공유거점 확보**를 위한 지역클러스트 조성과 판로유통망 구축
2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7조(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9.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및 **공유거점 형성** 및 확대방안
3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4.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축적과 **공유거점 확보**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조성과 판로유통망 구축

< 기능상 공유거점 현황 >

연 번	지자체 명	공유 거점	지원 내용
1	**경기도**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 공유오피스, 창업육성공간 등
2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 영상회의실, 공동판매장, 교육·교류공간 등
3	**충청북도**	소셜캠퍼스 온 충북	- 소셜라운지, 이벤트홀, 회의실 등

< 재활용 및 수리 관련 공유거점 현황 >

연 번	지자체 명	공유 거점	지원 내용	26년도 예산
1	**성동구**	성동공유센터	- 공구·캠핑·생활용품 대여, 공유주방 등	**219,260 천원**
2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청년공감	- 각종 생활물품 대여 및 공유공간 대관	**99,324 천원**

6 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의 범위를 대여·교환·나눔·수리·재사용 등으로 확대하고, 공유정책을 자원순환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생활권 중심의 공유거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공유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간 교류 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의 범위를 대여·교환·나눔·수리·재사용 등으로 확대하고, 공유활동을 자원순환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공유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생활권 중심의 공유거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 촉진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민의 공유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유휴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공유거점 설치·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부담과 시설관리 책임, 민간시설 지정기준 및 공유촉진위원회의 구성·해산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안 제6조와 제17조의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자원순환·재사용 관련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보조금 지원기준과 성과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1 지자체별 공유사업 관련 현황(26. 8. 기준)

자치구	공유 사업	위원회	공유 예산	비고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성장지원	상설	-	
종로구	동별 공구대여	상설	-	
중구	동별 공구대여	상설	-	
용산구	동별 공구, 우산 대여	비상설	6,500	
성동구	공유센터(민간위탁) 공간, 물품 대여	상설	217,900	
광진구	동별 공구대여	비상설	10,000	
동대문구	동별 공구대여	상설	9,600	
중랑구	동별 공구대여	상설	346,459	
성북구	동별 공구 대여 및 공모사업	상설	37,900	
강북구	동별 공구, 우산 캠핑용품, 로봇청소기 대여	상설	2,650	
도봉구	공구 등 물품대여	상설	9,600	
노원구	동별 공구대여	비상설	-	
은평구	동별 공구대여	상설	-	
서대문구	동별 공구대여	상설	-	
마포구	동별 공구대여	상설	1,550	유보액
양천구	동별 공구, 휠체어 대여 및 복지관 백일상 대여	비상설	4,720	
강서구	동별 공구대여	비상설	490	
구로구	동별 공구대여	상설	1,980	
금천구	동별 공구대여	비상설	-	
영등포구	동별 공구대여	상설	2,200	
동작구	동별 공구대여 및 공유 행사 개최(행사운영비)	상설	56,200	
관악구	동별 공구대여 (부서별 공유 성과만 수합 후 위원회 보고)	상설	3,955	
서초구	동별 공구대여	상설	-	
강남구	동별 공구대여 (공유조례 미제정 자치회관 조례 공구대여 개정)	상설	6,600	
송파구	동별 공구대여	상설	-	
강동구	동별 공구대여	상설	-	